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. 6. 5 선고 2018가단193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마을회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6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군산시 C 대 128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㉠ 부분
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양곡 창고 162㎡ 및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로
연결한 선내 ㉡ 부분 벽돌조 판넬지붕 단층체육관 35㎡를 각 철거하고,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2018. 4. 5.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516,4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이기선

별지